

2021년도 제2회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(외국어 상담원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2021년 제2회 기간제 근로자(외국어 상담원)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3일
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

I 최종합격자

○ 영어 상담원(2명)

응시번호	성명	응시번호	성명
21021005	조○주	21021008	김○우

II 채용후보자 등록안내

-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- 등록기간 : ‘21. 4. 26.(월) ~ ‘21. 4. 27.(화)
- 등록방법 : 방문접수
- 등록장소 :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민원실
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
- 문의 : 운영지원실 02) 2664-6202

Ⅲ

제출서류

○ 신원진술서(사진 부착)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(첨부 양식)
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※ 자필로 작성, 서명시 본인 이름 정자로 서명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모두 같아야 함

○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)

○ 채용신체검사서 1부

※ ‘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’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

○ 사진〔반명함판(3×4cm)〕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
○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(첨부 양식)

Ⅳ

유의사항

○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신원조회, 결격사유 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취소, 사전 예고 없는 퇴직이 있을 경우 별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	
등록기준지							
주 소							
실거주지	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	
학력 (고교 이상)	학 교 명	기 간		전 공 학 과	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경력	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 명	기 간		직 책(직급)		상 별 관 계(일자)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기 간		거주 목적		동반 가족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병역	군 별	기 간		병 과	최종 계급	미 필 사 유	
		. . ~ . .					
배우자 부모 자녀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	관 계	성 명	생년월일
	배우자				子女		
	父				子女		
	母				子女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작 성 자 성명				년 월 일 인(서명 또는 날인)			

(뒤쪽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, 동반가족 등 포함), 병역사항, 가족관계(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**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**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☐] 동의하지 않음 [☐]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**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]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
20 년 이 후 이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-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	
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	
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	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- 본인 동의

성명	생년월일	서명	
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		자필 서명	자필 서명

- 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

개인정보	민감정보
■ 주민 조회자료(경찰청)	■ 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시행 2021년 제2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1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김포공항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귀하